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조항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6조, 제28조, 제32조)
-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 정비(안 제30조)
 -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채취료 산정을 용도별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기준 변경
-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(안 제30조, 제66조)
 - 감정평가기관 → 감정평가업자(감정평가사 + 감정평가법인)
- 대부료, 매각대금,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 조항 변경(안 제35조, 제38조, 제38조의2, 제63조, 제63조의2)
 - 종전 분할납부 이자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율 조항 변경
-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변경 및 신설(안 제40조)
 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사항 반영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투자통상과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